

CCP서비스 등 청산업무기준 관련 SEC 최종규칙

- 최근 SEC는 도드-프랭크법에 따라 등록청산기구의 위험관리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입함
- SEC의 규칙은 집중결제상대방(CCP)서비스 제공 등록청산기구의 위험관리 및 운영 기준을 포함한 청산기구에 관한 운영기준을 도입하고, 모든 등록 청산기구에 대한 청산 기록 보관제도(record keeping)와 재무공시규제 등을 도입함
- 이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청산기구의 충분한 책임이행과 시스템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으로 국내 집중결제상대방(CCP)서비스 도입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임

- 최근 SEC는 도드-프랭크법(Dodd-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)에 따라 등록 청산기구의 위험 관리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입함¹⁾
 - 스왑 계약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새로운 법체계라고 불리는 도드-프랭크법은 증권-기초스왑(Security-based swaps)을 청산하는 기구를 청산기구에 포함시키고, '시스템적으로 중요'한 청산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SEC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킴
 - 이미 1933년 증권법 17A에 따라 SEC는 청산기구에 관한 감독 규정 제정권이 있었으나, 도드-프랭크법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'시스템적으로 중요'한 청산회사의 위험관리와 증권-기초스왑(Security-based swaps)을 청산하는 등록 청산기구의 감독에 관한 SEC의 규칙제정권한을 부여함
 - 일반적으로 청산기구는 증권거래의 중개인 역할을 하나, 중앙거래당사자(CCP: Central Counterparty)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상대방 위험(counterparty risk)을 관리하며 다자간 차액결제(multilateral netting of trades)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증권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
 - 이에 따라 SEC는 청산 업무에 관한 최종 규칙(17Ad-22)을 마련함
- SEC의 규칙은 집중결제상대방(CCP)서비스 제공 등록청산기구의 위험관리 및 운영 기준을 포함한 청산기구에 관한 운영기준을 도입하고, 모든 등록 청산기구에 대한 청산 기록보관제도(record keeping)와 재무공시규제 등을 도입함
 - 집중결제상대방(CCP)서비스의 위험관리기준, CCP 회원 기준의 주요내용

1) SEC, 2012, Clearing Agency Standards, Release No. 34-68080.



- 집중결제상대방(CCP)은 청산 참가자의 신용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, 최소한 1일마다 청산 참가자의 신용위험 노출 측정, 위험기반모델과 파라미터에 따른 증거금 제도 이용 및 증거금 제도를 최소 한달 주기로 평가,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, 매년 모델의 유효성 평가 실시(모델 개발과 운용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의함) 등 위험관리 기준이 포함된 서면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수립, 이행 및 유지해야 함
- 집중결제상대방(CCP)서비스 제공 회원은 딜러(dealer) 또는 증권-기초스왑 딜러(securities-based swap dealer)가 아닌 청산기구로서, 5천만달러 이상의 순자본유지 능력, 리스크 관리 기준 준수 및 순자본규제(net capital requirement)를 준수하여야 함

— 등록 청산기구의 기록보관(record keeping) 및 재무공시의 주요내용

- 모든 등록청산기구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의 경우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산출하고, 관련 청산 기록을 유지(record keeping)하며, 반드시 분기마다 산정해야나 SEC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산정함
- 모든 등록청산기구는 감사를 거친 재무보고서를 회계연도 말 이후 당사 웹사이트에 60일간 게시

— 기타 청산과 결제 절차에 관한 기준의 주요 내용

- 모든 등록청산기구는 청산과 결제절차에 관한 잘 설립된, 투명성과 강제력 있는 체계적인 규칙과 절차를 구비하여 비용-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
- 운영위험의 원인 식별 시스템 및 적절한 위험통제절차 개발, 결제은행 리스크의 제거 및 위험을 엄격히 제한하는 자금결제 협약 체결, 실행시점에서 자금이체의 완결성 보증, 모든 계약 관련 위험 평가 및 신중한 관리
- 결제일 영업종료 시 결제를 완료하나 위험 감소가 필요한 경우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완결, 청산기구가 중앙 증권예탁서비스와 일중 신용거래 연장 서비스 실시 시 참가자의 의무이행 실패를 처리하는 위험통제시스템을 도입, 증권대금 동시결제(delivery versus payment)를 위해 증권거래에서 펀드거래의 연계에 따른 주요 위험요소를 감소시킴
- 증권(securities certificates)을 부동화(不動化), 무권화(無券化)하며 계좌대체로 거래함
- 참가자 요건(청산 참가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무자원과 운용능력을 구비하도록 하도록 함)의 설정과 공시, 참가자에게 실제 전가되는 위험을 알리며 위험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청산기구의 의무를 공시, 시장참가자에게 청산서비스 및 청산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, 결제불이행 처리 절차의 수립과 그 핵심사항을 공개

□ 이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청산기구의 충분한 책임이행과 시스템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으로 국내 집중결제상대방(CCP)서비스 도입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임

연구원 박수연